

CONTACT



외국변호사 김정홍

T: 02.6386.0773
E: junghong.kim@leeko.com



변호사 조필제

T: 02.6386.6665
E: philje.cho@leeko.com



외국변호사 강규빈

T: 02.6386.6316
E: kyubin.kang@leeko.com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실무상 유의점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즉,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역외 세원 관리체계를 점차 정교하게 운영·발전시켜 왔습니다. 한편, 종전까지 해외신탁은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의 도입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23년 12월 31일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의 개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은 해외신탁의 주요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서(별지 제51호의2서식)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해외신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대국과 조세 정보교환을 통해 과세기반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더하여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까지 신설,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 해외신탁자료제출의무 발생 요건

해외신탁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신탁명세를, 그 밖의 신탁의 경우 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신탁명세를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자·내국법인이 신탁을 새로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새롭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신탁 설정 이후이더라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대표적으로, 미국의 Grantor trust가 이에 해당함) 위탁자에게 매년 자료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¹ 이때 지배·통제란 위탁자가 ① 신탁계약 해지권, ② 수익자 지정·변경권 또는 ③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해외신탁자료제출의 구체적인 내용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신탁 소재국가, 신탁 계약기간, 신탁 관련자(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신탁재산의 종류, 신탁재산가액 등을 기재한 해외신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재산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는 (i)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이후 해당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의 설정일(이전일), (ii)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권을 갖는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iii)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권을 가졌던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 종료일로 합니다.

또한, 해외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 산정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i) 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은 시가기준일의 금액 또는 가격을 시가로 하고, (ii)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가기준일의 가격을 시가로 하지만,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시장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시가기준일 가격 중 위탁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을 시가로 하며, (iii) 그 외의 해외신탁재산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그리고 위 시가 산정 방법에 따르더라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4. 불이행 시 과태료 및 자금출처 소명

기한 내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당국은 과거 10년 이내에 설정된 해외신탁의 취득 자금에 대해 90일의 기간 내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5년부터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와 함께 해외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납세협력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납세협력의무는 실제 세금 부담 없이 신고 및 자료제출로 의무가 완결되는 것이지만, 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의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특히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까지 해외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제조세 관련 실체적 및 절차적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신탁 및 해외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구조에 대한 점검, 자료제출의무 성립 여부 판단, 잠재적 법적 위험 분석 등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신탁 구조 및 관련 신고 이행 내역을 미리 재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¹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이전 설정된 해외신탁이더라도 2025년 이후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해당 신탁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인정됨.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